

신혼부부 특별공급 안내문

◆ 신혼부부 특별공급 청약 자격

구분	내용
신청자격	-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아래조건을 모두 갖춘 자 ① 대전광역시, 세종특별자치시 및 충청남도 거주 ② 혼인기간 7년 이내(혼인신고일 기준, 재혼 포함) ③ 「신혼부부 주택특별공급 운용지침」에서 정하는 소득기준 충족 ④ 무주택세대구성원 ⑤ 청약통장 가입기간 6개월 이상 및 지역별/면적별 예치금 이상 ※ 혼인신고일 ~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까지 계속 무주택자이어야 함 → 2018.12.11.이전 기존 주택을 처분하여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기간이 2년을 경과한 경우 2순위 청약 가능
선정방법	① 우선공급(75%) :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 별 월평균 소득 기준의 100%이하인 자 (배우자 소득이 있는 경우 120% 이하) ② 일반공급(25%) :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 별 월평균 소득 기준의 120%이하인 자 (배우자 소득이 있는 경우 130% 이하) ※ 우선공급에서 입주자로 미 선정 시 일반공급(25%)에 포함
경쟁 시 우선순위	- 우선공급 및 일반공급 내에서 경쟁이 있는 경우 ① 1순위 : 현재 혼인관계에 있는 배우자와의 혼인기간 중 출산한 자녀가 있는 자(임신, 입양 포함) ※ 재혼일 경우 모집공고일 현재 혼인관계에 있는 배우자와의 혼인기간 내 임신, 출산, 입양 자녀의 경우만 해당 ② 2순위 : 무자녀 / 2018.12.11.이전 기존 주택을 처분하고 무주택기간이 2년 경과한 자 - 순위 내에서 경쟁이 있는 경우 ① 대전광역시 1년 이상 계속 거주자 ② 미성년 자녀(태아 포함) 수가 많은 자 ③ 미성년 자녀(태아 포함) 수가 같은 경우 추첨으로 선정
유의사항	※ 임신과 입양의 경우, '임신진단서' 등과 같은 관련된 자료를 제출해야 하며, 입주 전 파양이나 불법 낙태의 경우 당첨 취소 및 부적격 처리 됨. ※ 자녀가 주민등록표등본상 세대주와 다른 지역에 거주할 경우 가족관계증명서를 제출하여 미성년자임을 입증하여야 함.

◆ 신혼부부 특별공급 소득기준 「2019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 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 기준」

공급유형	구분	2019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 기준						
		3인 이하	4인	5인	6인	7인	8인	
신혼부부 우선공급 (기준소득, 75%)	배우자 소득이 없는 경우	100%이하	5,554,983원	6,226,342원	6,938,354원	7,594,083원	8,249,812원	8,905,541원
	신혼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	120%이하	6,665,980원	7,471,610원	8,326,025원	9,112,900원	9,899,774원	10,686,649원
신혼부부 일반공급 (상위소득, 25%)	배우자 소득이 없는 경우	100%초과 ~120%이하	5,554,984원 ~ 6,665,980원	6,226,343원 ~ 7,471,610원	6,938,355원 ~ 8,326,025원	7,594,084원 ~ 9,112,900원	8,249,813원 ~ 9,899,774원	8,905,542원 ~ 10,686,649원
	6억원 이상~9억원 이하 주택을 생애최초로 구입하는 경우	100%초과 ~130%이하	5,554,984원 ~ 7,221,478원	6,226,343원 ~ 8,094,245원	6,938,355원 ~ 9,019,860원	7,594,084원 ~ 9,872,308원	8,249,813원 ~ 10,724,756원	8,905,542원 ~ 11,577,203원
	신혼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	120%초과 ~130%이하	6,665,981원 ~ 7,221,478원	7,471,611원 ~ 8,094,245원	8,326,026원 ~ 9,019,860원	9,112,901원 ~ 9,872,308원	9,899,775원 ~ 10,724,756원	10,686,650원 ~ 11,577,203원
	6억원 이상~9억원 이하 주택을 생애최초로 구입하는 경우	120%초과 ~140%이하	6,665,981원 ~ 7,776,976원	7,471,611원 ~ 8,716,879원	8,326,026원 ~ 9,713,696원	9,112,901원 ~ 10,631,716원	9,899,775원 ~ 11,549,737원	10,686,650원 ~ 12,467,757원

- 기준소득 : 신혼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, 부부 중 1인의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00%를 초과하지 않아야 하며, 부부 중 1인 소득이 월평균 소득기준 100%초과 시 일반공급 25%(상위소득)[신혼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(월평균 소득기준 120%초과~130%이하)]를 선택하여야 함.
- 상위소득 : 신혼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, 부부 중 1인의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20%를 초과하지 않아야 함.
- 6억원 이상 9억원 이하 주택을 생애최초로 구입하는 경우(세대내에 속한 모든 자가 과거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는 경우)에는 일반공급 기준소득을 10%씩 완화 적용
- ※ 9인 이상 가구 소득기준 → 8인 가구원 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+(1인당 평균소득(655,729)*(N-8)) ※ N → 9인 이상 가구원 수

◆ 소득증빙서류

구분	제출서류	발급처	
일반 근로자	① 전년도 근로소득원천징수 영수증 또는 전년도 근로소득자용 소득금액증명서 ② 재직증명서 ※ 전년도 휴직기간 있는 경우 ▶ 전년도 갑종근로소득 대한 소득세원천징수증명서	* 해당직장 * 세무서	
근로자	① 금년도 근로소득원천징수부 또는 갑종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원천징수영수증 ② 재직증명서 ※ 재직기간이 1개월 미만 근로소득원천징수부 발급되지 않을 경우 → 동일한 직장의 동일직급, 동일효봉인 자의 전년도 원천징수영수증과 재직증명서를 제출(개인정보 삭제)	* 해당직장	
	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이 발급되지 않는 자	① 총급여액 및 근무기간이 기재된 근로계약서(직인날인) ② 직인날인된 월별급여명세서(근로소득지급조서) ※ ①, ② 서류 중 하나 제출	* 해당직장
자영업자	① 전년도 종합소득세 신고자용 소득금액증명원 ② 사업자등록증	* 세무서	
	간이과세자 중 소득세 미신고자	① 간이과세자 사업자등록증	* 세무서
	신규사업자	① 국민연금보험료납입증명서 또는 최근의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서(부분) ② 사업자등록증	* 국민연금관리공단 * 세무서
법인사업자	① 전년도 종합소득세 신고자용 소득금액증명원 ② 사업자등록증	* 세무서	
보험모집인 또는 방문판매원	① 전년도 사업소득원천징수영수증 ② 전년도 사업소득자용 소득금액증명원 또는 당해 회사의 급여명세서	* 세무서 * 해당직장	
국민기초생활수급자	①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	* 주민센터	
비정규직 근로자 또는 일용직근로자	① 계약기간 및 총 급여액이 명시된 근로계약서 또는 월별급여명세서(직인날인) 또는 근로소득지급조서(직인날인)	* 해당직장	
무직자	① 비사업자 확인각서(견본주택에 비치)	* 접수장소	

※ 본 안내문은 편집 및 인쇄 과정에서 오류가 있을 수 있으므로 입주자모집공고를 필히 확인하여 주시기 바라며, 기재요류·미기재 사항은 관계법령에 따릅니다.

◆ 신혼부부 특별공급 제출서류

구분	서류유형		해당서류	발급기준	구비서류 및 유의사항
	필수	추가 (해당자)			
공동 서류	0		무주택서약서, 개인정보수집·이용동의서 등	본인	- 견본주택에 비치 - 무주택 입증서류(건물등기부등본 또는 건축물 관리대장, 기타 무주택자임을 입증하는 서류)
	0		주민등록표등본 (상세)	본인	- 주민등록번호(세대원 포함), 세대구성사유 및 일자,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, 전입일/변동일/변동사유 포함하여 발급
	0		신분증	본인	-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, 여권 *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가림처리 - 재외동포 : 국내거소사실신고증 및 국내거주 사실증명서, 외국인 : 외국인등록증 및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
	0		청약통장순위(가입) 확인서	본인	- 청약통장 가입은행으로부터 순위(가입)내역 발급 또는 한국감정원 '청약Home'에서 청약통장순위(가입)확인서 발급(www.applyhome.co.kr) [장애인, 국가유공자, 철거주택소유자 제외] - 인터넷청약(청약Home)에서 청약한 경우 생략
	0		주민등록표초본 (상세)	본인	- 주민등록번호(세대원 포함), 주소변동 사항(인정받고자 하는 기간 포함),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포함 발급
	0		가족관계증명서 (상세)	본인	-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(세대원 포함)를 포함하여 발급
	0		혼인관계증명서 (상세)	본인	- 단독세대일 경우
	0		주민등록표등본 (상세)	배우자	- 주민등록상 배우자가 분리된 경우 제출 (상기 등본발급 시 유의사항에 따라 발급 비람)
	0		출입국사실증명원	본인	- 「주택공급에 관한 규칙」 제4조제5항에 따라 해당지역 거주자로 우선 공급받으려는 경우 (해당지역 : 대전 1년이상 계속 거주자) - 기록대조일을 본인생년월일-입주자모집공고일(20.11.19.)로 지정하여 발급
	0		복무확인서	본인	- 10년 이상 장기복무 군인이 입주자거주에 가입하고 그가 거주하는 지역과 다른 주택건설지역의 주택을 공급받으려는 경우, 군복무기간(10년 이상)이 명시
신혼부부 특별공급	0		혼인관계증명서 (상세)	본인	- 혼인신고일 확인
	0		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(상세)	본인 및 9세 이상 세대원	- 공고일 이후 발행분으로 공급신청자 및 만 19세 이상 세대원 전원이 표시되어야 하며, 표시되지 않은 세대원의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도 제출(발급처:국민건강보험공단, FAX수신 문서 가능) ※ 건강(의료)보험증이 모집공고일 이후 발행분일 경우 건강(의료)보험증 제출 가능
	0		소득증빙서류(상세)	본인 및 19세 이상 세대원	- 공고일 이후 발행분으로 공급신청자 및 만 19세 이상 세대원 전원의 소득입증서류 (단, 배우자 분리세대는 배우자의 소득입증서류) ※ FAX 수신문서 등 복사본 접수 불가, 서류 접수 시 직인이 날인된 원본 서류 필수
	0		가족관계증명서	자녀	- 재혼 가정의 자녀일 경우 공급신청자와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상에 등재된 경우에만 해당
	0		기본증명서 (상세)	자녀	- 출생관련 일자 확인 필요 시
	0		임신증명서류 또는 출산증명서	본인 또는 배우자	- 임신의 경우 임신증명서류(임신진단서, 유산 낙태관련 진단서 등) 제출 (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임신사실 확인이 가능해야 함) ※ 의료법에 의한 의료기관에서 발행한 임신진단서만 인정(담당 의사명, 의료기관등록번호, 출산예정일 및 의료기관 연락처가 정확하게 기재되어 있고, 해당 의료기관 직인이 날인된 원본)
	0		입양관계증명서 또는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	본인 또는 배우자	- 입양의 경우
	0		임신증명 및 출산이행 확인각서	본인 또는 배우자	- 임신의 경우(견본주택에 비치)
제3자 대리인 신청서 추가서류	0		인감증명서, 인감도장	청약자	- 본인발급분 - 용도 : 주택공급신청 위임용, 단 외국인인 경우 분국 관공서의 증명(서명인증서)이나 이에 관한 공정증서
	0		위임장	청약자	- 청약자의 인감도장 날인, 접수 장소에 비치
	0		신분증, 인장	대리인	-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, 여권 *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가림처리 - 재외동포 : 국내거소사실신고증 및 국내거주 사실증명서, 외국인 : 외국인등록증 및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

※ 상기 제증명서류(신청자 구비서류)는 최초모집공고일(2020년 11월 19일) 이후 발행분에 한하며, 상기 구비사항이 완비된 경우에 한하여 접수하고 제출된 서류는 반환되지 않습니다.

※ 인감증명서 용도란은 공란으로 발급하므로 본인이 직접 기재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. (외국인 등의 경우 인감증명서 및 인감도장은 공급신청서와 동일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함.)

※ 상기 제증명서류 제출 시 주민등록번호(뒷자리 포함) 전체표기하여 발급받은 서류로 제출하여야 합니다.

※ 주민등록표등·초본 발급 시 "세대주 성명 및 관계"를 생략하여 발급하고 있으니, 반드시 "세대주 성명 및 관계"에 대한 표기를 요청하여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.

※ 해당 직장에서 발급되는 모든 서류는 반드시 직인 날인이 필요합니다.

※ 본인 이외에는 모두 대리 신청자(배우자 및 직계존·비속 포함)로 간주합니다.